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00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 : 김인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동욱, 김성준, 김원태, 김지향, 남창진, 박승진, 서상열, 신복자, 이숙자, 이원형, 임규호, 임종국, 장태용, 최민규, 한 · 신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가 상위 법령인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각 지자체에서 수립 ·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기와 서로 달라, 법령과 일치시켜 실무 혼선을 막고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로 수정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12월”을 “1월”로, “차기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(이하 "시책 및 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7조(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----- 1월 ----------해당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